Part5

독일의 논의에서 바라본 언론소송 재판관할권의 쟁점

이수종 |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

독일의 논의에서 바라본 언론소송 재판관할권의 쟁점

이 수 종
언론중재위원회 전문위원/법학박사

Ⅰ. 문제제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촉발된 반론·정정·추후보도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판관할권의 결정 문제는 사실 언론법 차원에서는 해당 청구권에 국한된 관할권 조정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 인터넷 매체의 발전과 그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겨난 국내 및 국제적 관할권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미디어법 영역의 중요한 화두에 속한다.

이처럼 이번 세미나의 “언론 소송관할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는 단지 실무상 법원의 입장 차이의 조율에 관한 주제에 그치기보다는 점 더 확대된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론소송 관할문제에 관한 논의의 단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왜냐하면 아직 국내에서의 관련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이다.[1] 그럼에도 이러한 광범위한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논의를 기획자가 제시한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독일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개략적으로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미나의 핵심 쟁점으로 제시된 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관할과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토지관할의 불일치 문제, ii)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소송의 토지관할에 있어서 법원 내 불일치 문제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발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다만 지면사정상 이번 세미나의 현안에 맞게 본 발제문의 내용은 연방독일 역내의 논의로 제한하고 국제관할권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Ⅱ. 독일 언론소송에서의 재판관할권 문제

독일에서 언론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닌 금지청구권이 가장 빈번하게

1) 살펴본 국내에서의 대표적 관련논의로는 김상훈,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국제재판관할-불법행위 특별재판적과 관련하여-, 한림법학 FORUM 제16권(2005), 김효정,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의 준거법, 국제사법연구(2024.6), 오정후, 민사절차법의 관할에 대하여, 저스티스 통권 제134호(2013. 2) 등이 확인된다.

이용되고 있고 반론보도청구권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와는 차이를 보인다.[2] 다만 독일 민법 제1004조와의 연계 하에 제823조 제1항(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근거로 하는 금지청구권은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모두 마찬가지로 민법 제823조 제1항의 불법행위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재판관할권 결정문제 역시 동일하게 정해진다. 반면에 각 주법에 개별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는 반론보도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엄연히 다른 관계로 이에 관한 재판관할권의 문제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한다.[3]

1. 금지청구 등의 토지관할

원칙적으로 언론보도의 피해당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7조에 따른 언론사나 방송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대상으로 하거나 경우에 따라 제13조에 따라 개별적 편집인의 보통재판적인 주소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의 언론소송에 있어서 실무상으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토지관할은 대개 민사소송법 제32조에 규정된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이다.[4] 이에 금지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 모두 불법행위에 의한 청구로서 이러한 행위가 벌어진 곳에 소재한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되며, 이러한 불법행위지(Begehungsort)는 행위지(Handlungsort)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Erfolgsort), 즉 결과적으로 불법행위가 저질러졌거나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곳의 모든 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한다.[5] 따라서 출판물의 경우 행위지는 출판물이 발행된 곳이고, 나아가 출판물이 의도한 바에 따라 전파된 곳 어디에서든 가능하다. 물론 원고의 주소지나 거소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6]

이와 관련해 소위 “이동관할권(fliegende Gerichtsstand)”의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원고나 신청인은 행위지든 결과발생지든 인격권 침해사실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한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을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7] 예컨대 가처분절차에서 필수적인 긴급성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주는

2) Seitz (2019). Handbuch des persönlichkeitsrechts, 2 Aufl, §43, Rn. 1.
3) Soehring/hoene (2019). Presserecht 6. Aufl, §29 Rz. 30.24a.
4)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25.
5) Benjamin Korte(2019). Praxis des Presserechts 2.Aufl §5 Rn. 91.
6) Wenzel/Burkhart/Peifer(2018). Das Recht der Wort-und Bild- Berichterstattung 6. Aufl, §12 Rz. 121.
7) Benjamin Korte(2019). a.a.O., §5 Rn. 91; Himmelbach/Mann(2022). Presserecht, §3 Rn. 13.

관대한 곳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8]
이에 독일에서는 무엇보다 지면신문 및 인터넷에서 공표된 보도로 인해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2조의 소위 이동관할권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한해야 하는지에 관해 오랜 기간 동안 격론의 대상이 되었다.[9] 하지만 입법자의 이동관할권의 제한에 관한 입법개혁 노력은 결국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10]

(1) 지면신문, 방송
신문이나 방송 등 기존의 전통적 매체의 경우 재판관할권은 문제된 보도가 의도한 바대로(bestimmungsgemäß) 전파된 곳에 민사소송법 제32조의 이동관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연방대법원의 전통적 입장이다.[11]
이러한 “의도한 바에 따른 전파”라는 법적 기준은 특별한 사정, 즉 인쇄물의 한부를 주문하거나 지인을 통해 구매하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연방대법원 역시 판매조직을 거치지 않고 아울러 정기적으로 배달되지 않은 채 간헐적으로 제3자에게 한 부 혹은 여러 부만이 한 지역에 배포됨으로써 통상적인 잡지의 배포지역을 벗어나 거주하는 독자들에게 그 내용이 알려지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설시했다[12]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신문, 잡지 혹은 전국단위로 수신되는 방송의 경우에는 모든 지방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13]

(2) 인터넷 공표의 경우
한편, 인터넷을 통한 인격권 등 법익침해 내용의 전파에 있어서는 이동관할권의 인정과 관련해 특수한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 매체는 내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검색가능하기 때문에 독일 재판부에만 재판관할이 인정되지 않고 세계적인 재판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14]

---

8) Himmelbach/Mann(2022). a.a.O., §3 Rn. 13.
9) 대표적으로 입법정책적 차원에서는 2013년의 연방의회 결의안, 학계 차원에서는 2009년 Hoeren 대 Prinz의 논쟁에서 시작해 2014년 Jürgens, 2015년 Dölling의 실증결과를 둘러싼 논쟁, 이어서 2020년 Jürgens의 재논박을 들 수 있다. Jürgens가 제시한 대표적인 실증결과의 예로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이동관할권에 따라 115개의 지방법원들 가운데 단지 3개 내지 5개 법원에만 언론사건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했고, 무엇보다 퀼른 언론전담재판부의 급격한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Vgl. Uwe Jürgens, Aufsteigende Gerichtsstände - Der fliegende Gerichtsstand im Presserecht, NJW 2020, 1847.
10)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2 Rz. 120.
11) BGH NJW 1977, 1590, 1591.
12) NJW 1977, 1590; Korte. B(2019). a.a.O., §5 Rn. 93f.; Himmelbach/Mann(2022). a.a.O., §3 Rn. 24.
13)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25.

그런 점에서 독일 국내에서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공표의 경우 토지관할에 관한 원칙에 관해서 아직 연방대법원은 명시적 입장을 밝힌 바 없다. 다만 미국의 뉴욕타임즈 보도로 인한 사건에서 국외의 인터넷 제공기사로 인한 인격권 침해소송의 경우 재판관할권에 관해서 2010년 명예를 침해하는 내용의 단순한 검색가능성을 넘어서는 "국내 관련성(Inlandsbezug)"이 필수적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는 첫째, 문제된 보도의 단순한 검색가능성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경우 실제로 이를 인지(Kenntnisnahme)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둘째, 해당 보도의 인지를 통해 원고의 인격권 침해가 국내에서 발생했을 경우로 제한했다.[15] 다만, 이 두 번째 심사단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해명되지 못했다.[16]

그럼에도 프랑크푸르트 상급법원은 2012년 이러한 뉴욕타임즈 판결에 따라 순수한 국내에서의 인터넷 보도에 대해서도 구체적 장소관련성을 필요로 하며, 따라서 침해행위는 의도한 바에 따라 해당 관할지역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해석을 국내의 이동관할권의 제한근거에 원용하기도 하였다.[17]

하지만 이후 인터넷 보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동원된 뉴욕타임즈 판결의 기준은 보도가 단지 뚜렷한 지역관련성을 가졌을 때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란덴부르크 상급법원로부터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순수한 지역콘텐츠를 다루는 인터넷 서비스의 경우라 할지라도 지역을 넘어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다루는 경우에는 뚜렷한 지역관련성이 부인되고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 브란덴부르크 상급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의 "Shevill"-사건에 띠라 이동관할권의 제한은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모순된다고 판단했다. 행위지는 매체가 전파되고 해당 매체의 보도로 인해 당사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곳 모두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이동관할권 결정을 위해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의 효과가 모든 의도된 수신인에 대한 전달에서 이미 발생하는 것이지 원고의 인지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18]

아울러 많은 지방법원들은 뉴욕타임즈 판결에서 도출된 연방대법원의 인터넷 보도에 관한 토지관할 제한기준은 민사소송법 제32조의 이동관할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9]

이후 비교적 최근인 2021년 드레스덴 상급법원은 여전히 2010년의 뉴욕타

14)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26.
15) NJW 2010, 1752, 1754.
16) Benjamin Korte(2019). a.a.O., §5 Rn. 95.
17) MMR 2012, 259.
18) MMR 2017, 261.
19) Himmelbach/Mann(2022). a.a.O., §3 Rn. 30f.

임즈 판결은 대체로 토지관할 결정에 있어서 전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인터넷 기사의 경우 단순한 검색가능성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민사소송법 제32조의 행위지는 보도내용이 분명히 재판관할지와 관련을 가지는 경우(Inhaltliche Bezug)에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관련성은 무엇보다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및 당사자의 전국적 지명도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관할지와 분명한 내용관련성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지 역시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0]

2. 금지청구 등의 직무관할

한편, 2021년 1월 1일부터 약칭 "법원의 전문화 확대를 위한 법률"의 발효로 모든 독일 지방법원과 상급법원은 언론사건을 전적으로 전담하는 전문재판부를 설치하도록 강제됨으로써 언론사건에 관한 직무관할이 설정되었고, 민사사건에서 법원의 전문화가 확대되었다(법원조직법 72a조 제1항 제5호).[21] 이에 따라 각 주마다 지방법원 1곳과 상급법원 1곳에 두거나 여러 주에 걸쳐 관할권이 있는 1심, 2심 법원을 하나로 법원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2조에서 도출된 이동관할권을 언론소송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언론전담재판부가 있는 곳에서만 소송제기가 가능해졌다.[22]
이러한 최근의 상황변화는 앞서 언급한 토지관할에 일정한 제한을 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이동관할권은 그대로 유지된다.[23] 다만 여러 주에 걸쳐 언론사건을 공동으로 담당하는 언론전담재판부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동관할권에 일정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24]

3. 반론보도청구권의 재판관할권

(1) 가처분절차를 통한 반론보도청구권 사건의 처리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주법의 규정들은 반론보도청구가 자발

20) Matthis Lehr(2021). Einschtänkung des "fliegenden Gerichtsstands" bei Internetveröffentlichungen ohne deutlichen inhaltlichen Bezug zum Gerichtsstandort, GRUR-Prax 2021, 287.
21) Himmelbach/Mann(2022). a.a.O., §3 Rn. 34.
22)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25a.
23)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25.
24) Uwe Jürgens, Aufsteigende Gerichtsstände - Der fliegende Gerichtsstand im Presserecht, NJW 2020, 1847.

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민사법원에 대한 가처분절차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25] 즉, 대부분의 주법상 반론보도 규정들은 "가처분 선고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고 "본안소송 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26] 이때 청구의 위험성이 소명될 필요는 없다.[27] 함부르크 출판법 제11조 제4항 제3문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반론보도청구권의 소송상 관철은 가처분선고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바이에른주 출판법의 경우에는 본안심리 역시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실무상으로는 오랜 동안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가처분절차에서도 독자적으로 소송상 무기평등의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28][29]

연방대법원 역시 반론보도청구권은 언론법상의 독자적 제도이고, 따라서 이러한 민사상 청구의 실현에 관한 규정 역시 그의 특성에 부합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30] 이에 언론법상 특징을 지닌 주법이 적법하게 개입한 것이라고 인정된다.[31]

이는 방송영역이나 디지털서비스(과거의 텔레미디어) 영역도 마찬가지인데, 그 근거는 반론보도청구의 경우 게재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시의성(Akttualitätsbezug)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본안소송을 처음부터 제외하게 된다.[32]

(2) 보통재판적

반론보도청구권은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관철되므로 보통재판적은 전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2조, 제13조 제17조, 제21조에 따른다. 따라서 가처분신청은 출판미디어의 경우에 언론사 소재지(제17조)로 정해지거나 편집책임자의 주소지(제12조)에 속한다. 방송보도의 경우에는 방송사의 소재지(제17조),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의 소재지(제17조)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법원에 속한다.[33] 만약 편집책임자에게 청구될 경우 그의 주소지에 법원 관할권이 있게 된다. 또한 언론사가 예외적으로 두 개의 등록 소재지를 보유한 경우 법원은 두 소재지 가운데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관할권을 가진다. 한편, ARD의 방송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는 ARD 국가협약 제8조에

25)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29.74.
26) Spieker, Hamm(2022). Beck'sches Rechtsanwalts-Handbuch, 12 Aufl, Rn. 77.
27) 예컨대 튀링겐주 출판법 제11조 제4항 제4문.
28) BeckRS 2018, 26322.
29) Benjamin Korte(2019). a.a.O., §5 Rn. 232.
30) GRUR 1968, 214.
31)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06.
32)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10.
33) Seitz (2019). a.a.O., §43, Rn. 60;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29.77.

따라 전적으로 문제된 보도를 프로그램에 반영한 방송사의 소재지에 법원의 관할권이 인정된다.[34]
한편, 민사소송법 제29조의 이행지 재판적은 단지 계약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반론보도청구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35]

(3) 불법행위 사건의 이동관할권의 적용여부
민사소송법 제32조는 불법행위의 특별재판적으로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에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있으며, 주법에 따른 반론보도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6] 그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32조의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에 따른 이동관할권은 반론보도청구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823조 제2항의 "불법행위"를 전제하지 않는 독자적인 종류의 법제도이기 때문이다.[37]
한편, 반론보도청구권은 예외 없이 비재산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합의관할이나 응소관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40조 제2항).[38]

(4) 사물관할
관할권이 1심 지방법원(Landgericht)에 속하는지 지방법원 지원(Amtsgericht)에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사물관할은 금지청구권이 되었든 반론보도청구권, 정정보도청구권이 되었든 법원조직법 제23조 제1호에 의거 소송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것이 대체로 5천 유로를 넘어서면 통상 주의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존재한다.[39]
이러한 소송가액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특히 사건의 범위와 중요성 및 관련자의 경제적 상황의 고려 하에서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확정한다(민사소송법 제3조).[40]
독일의 실무에서 반론보도청구의 소송가액은 원칙적으로 5천 유로 이상으로 정해지며 보통 1만에서 5만 유로 사이에서 소송가액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대개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주어진다.[41]
함부르크의 경우 반론보도의 소송가는 통상 1만~1만5천 유로로 책정된다.[42]

---

34)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29.78.
35)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22.
36) Spieker, Hamm(2022). a.a.O., Rn. 76.
37) Seitz (2019).a.a.O., §43, Rn. 60.
38)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22.
39) Seitz (2019). a.a.O., §43, Rn. 61.
40) Soehring/hoene (2019). a.a.O., §29 Rz. 30.37.
41)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24.
42) Benjamin Korte(2019), a.a.O., §5 Rn. 234.

(5) 반론보도청구권의 병합처리 가능성 여부

반론보도청구권은 금지청구 등 다른 청구권들과 병합하거나 병행하여 진행될 수 없다. 이는 특별한 주법에 따른 언론법상의 특유절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금지청구 등과 반론보도청구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배제된다.[43]

특히 반론보도청구권에 대해 법원들은 소위 "전부 아니면 전무 원칙(Alles-oder-nichts-Prinzip)이 적용되고, 반론보도청구권은 고도의 개인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실무상 원칙적으로 원래 청구된 반론내용이 취소되고 새로운 버전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반론청구서가 송부되어야 한다. 그에 반해 금지청구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제938조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가처분내용을 자유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금지청구와 반론보도청구는 신속하게 분리되어야 한다.[44]

Ⅲ.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

앞서 살펴본 독일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선 국내에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은 원고 즉 신청인의 주소지에도 존재한다는 전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실무상 근거로는 우리 법원들이[45]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불법행위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에 변제해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도 관할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례들에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의 판단근거는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인한 행위를 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기에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독일의 경우도 인격권이 민사상 재산권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많은 다툼과 논란이 있지만, 그러한 재산권 성격을 인정하는 학자들조차 이를 전면적 재산권으로 보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다. 즉 인격권의 재산권 성격은 우선적으로 법적 성격이 아니라 시장 매

43) Wenzel/Burkhart/Peifer(2018). a.a.O., §11 Rz. 207.

44) Benjamin Korte(2019). a.a.O., §5 Rn. 237.

45) 대표적으로 대법원 1979. 7. 25.자 선고 79마 20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11. 4. 선고 2020가단23333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7371 판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6. 3. 6. 선고 2025가단50935 판결.

커니즘에 의한 사실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46]
이에 연방대법원 역시 인격권의 재산적 이익은 특히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음성 그밖의 인격적 표지에 자신의 평판에 해당하는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이를 제3자가 상품광고에 이용하도록 허용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정신적 이익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47] 이러한 점에서 인격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재산권에 관한 소로 보고 민사소송법 제8조 의무이행지에 의거해 의율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 개인적 소견이다.
따라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다루는 언론소송의 토지관할은 보통재판적이 되거나 아니면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체로 민사소송법 제18조에 따른 불법행위 특별재판적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시에 국제관할권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인격권 침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즉 기사삭제청구권 등이 소송대상으로 되었을 경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아직 쟁점이 되거나 논란의 대상이 된 적은 없지만 독일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불법행위의 이동관할권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보아야 할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언론중재법 제26조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병합하여 제기할 수도 있고, 이를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하도록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단 전속관할을 인정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제6항에서 정정보도청구와 반론 및 추후보도청구를 분리하여 전자는 민사소송법에 따르고 후자는 가처분절차에 따르도록 정한 것에서 많은 혼란과 소송상 어려움이 야기된다.
반론보도청구권을 가처분절차에 의하도록 정한 것은 앞서 살펴본 독일의 언론법을 참조한 것으로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반론권제도의 취지상 신속성과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방안으로 이해된다.[48] 하지만 독일에서도 하나의 절차에서 반론권과 금지청구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권리의 속성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우리의 경우에도 이를 과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

46) Götting(2019). Handbuch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1 Rn. 39.
47) BGH GRUR 2000, 709, 712-Marlene Dietrich.
48)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1157면 이하.

만 현실적인 면에 국한했을 때 반론보도청구권의 소송 역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로 정한 이상 이 역시 전속관할의 성격을 배제하기 어렵고 따라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도로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박용상(2008). 명예훼손법, 현암사

Benjamin Korte(2019). Praxis des Presserechts 2. Aufl.
Götting(2019). Handbuch Persönlichkeitsrecht 2 Aufl.
Himmelbach/Mann(2022). Presserecht, C.H.Beck.
Matthis Lehr(2021). Einschtänkung des "fliegenden Gerichtsstands" bei Internetveröffentlichungen ohne deutlichen inhaltlichen Bezug zum Gerichtsstandort, GRUR-Prax 2021, 287.
Seitz (2019). Handbuch des persönlichkeitsrechts, 2 Aufl.
Soehring/hoene (2019). Presserecht 6. Aufl.
Spieker, Hamm(2022). Beck'sches Rechtsanwalts-Handbuch, 12 Aufl.
Uwe Jürgens(2020). Aufsteigende Gerichtsstände - Der fliegende Gerichtsstand im Presserecht, NJW 2020, 1847.
Wenzel/Burkhart/Peifer(2018). Das Recht der Wort-und Bild-Berichterstattung 6. Aufl.